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1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나50065 양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군
제 1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5가단51923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1.
판 결 선 고	2016.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20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1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길

판사 허문희

판사 정아영